

청주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가단88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충북상호신용금고

변론 종결2018. 6. 1.

판결 선고2018.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1. 9. 26. 접수 제746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1976. 5. 11. 상호 신용계 업무, 할부상환 방법에 의한 소액 신용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 12. 27.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된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1.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74662호로 1991.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6.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9. 26.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6. 9. 26.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8. 11. 24.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신용금고'라 한다)에게 피고의 사무 및 채권, 채무 전부와 사무서류 일체를 인계(양도)한 후 청산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업무도 신충북신용금고에게 인계되었고, 그 후 신충북신용금고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거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위 말소등기 업무를 인계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하고,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1. 24. 신충북신용금고와 사이에, 1996. 4. 10.자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하여 피고가 1976. 5. 20.부터 1996. 4. 10.까지 대출 등으로 취득한 일체의 채권(합계 3,107,568,783원)과 채무 및 이에 관한 사무를 신충북신용금고에게 인계(양도)하고, 신충북신용금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인수(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998. 11. 24.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신충북신용금고는 2000. 6. 3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받는 한편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었고, 2000. 11. 29.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는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순차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신충북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신충북신용금고나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피고의 포괄승계인도 아닌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인 피고라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피고 적격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인바, 피고가 1996. 12. 27. 해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청산사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양희

별지